

문서번호	보건위생과-3753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식품안전담당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차원경	김종호	03/08 황원숙			
협 조					

『식품안전 성북』

2016년 성북구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2016. 3.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성북』

2016년 성북구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 가공식품 관리 행정기반 체계를 보강하고 안전한 가공식품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위생 영업자와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성북』 달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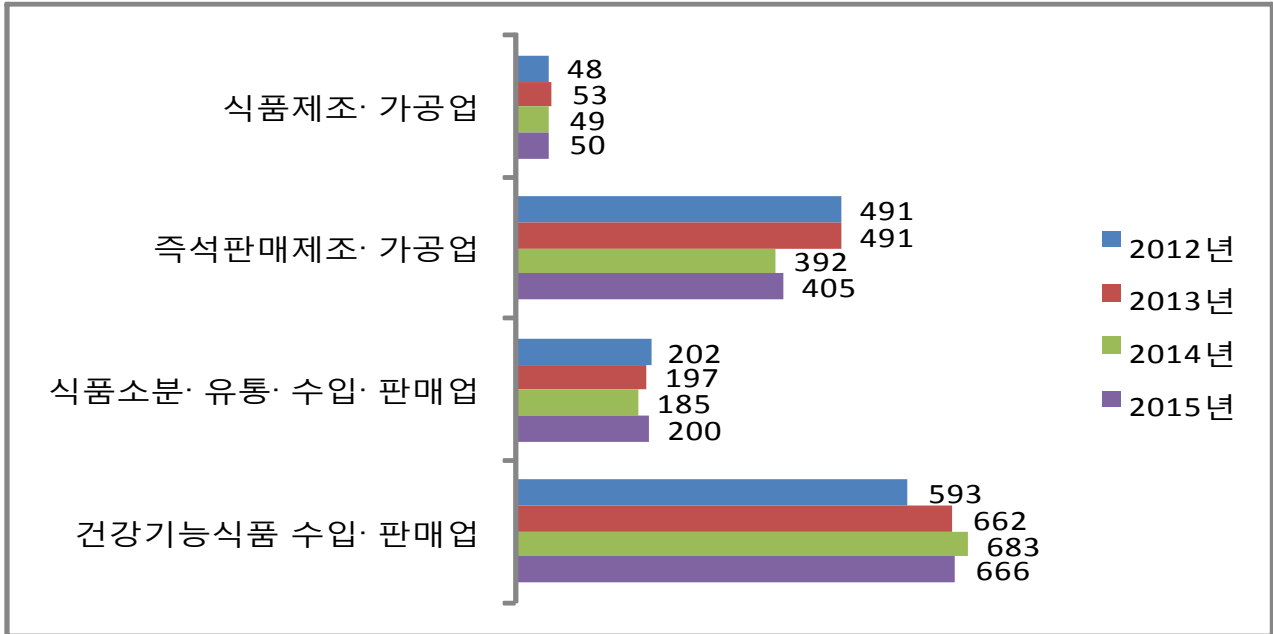
I 목표 및 추진과제



II

현황

연도별 가공식품 관련 업소수



업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식품제조·가공업	48	53	49	5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91	491	392	405
식품소분·유통·수입·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202	197	185	200 (119)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수입판매업)	593	662	683	666 (22)
총계	1,334	1,403	1,309	1,321

- 전년도에 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증가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감소하고 있으며
- 2015. 2. 4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수입판매업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되어 전체 관리대상업소 수가 감소 함

가공식품 관련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기타식품 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운반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판매업
1,180	50	405	16	2	38	15	1	9	644

※ 2015. 12. 31일 현재

◆ 관련 직능단체 현황

단체명	회장	사무실 주소	회원수	전화번호 (팩시밀리)
(사)한국떡류식품 가공협회 성북구지회	김세규	강북구 송중동 860-163 솔잎빌딩 4층	100명	02-981-5382 (F.02-981-5383)
한국식용유지고추 가공업 성북구지회	김규형	성북구 종암동 3-1004	60명	02-913-0374

Ⅲ 전년도(2015년) 가공식품 업무 추진실적

가.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안전관리

○ 가공식품 관련 점검 실적 (업소 수)

총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가공	식품 소분업	기타식품 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 운반업	집단급식 소 식품판매 업	건강기능 식품일반 (유통)판매업
1,212	70	424	24	90	20	1	12	571

※ 점검율(점검업소수/대상업소수) 102%

○ 행정처분 내역

위반 내역 (건)									행정처분 내역 (건)							
소계	표시 기준	시설 기준	시설 별실	자가 품질 검사	준수 사항	취급 기준	허위 과대 광고	기타 (변경사 항미신 고)	소계	폐쇄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시설 개수 명령	시정 명령	과 태 료	과 징 금
29	1	2	1	5	12	4	2	2	29	1	6	4	2	2	3	11

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내역

○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 건수 및 액수

구분 연도	포상금 지급건수(건)				포상금 지급액수
	계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안전인증 표시무단사용	보존기준 위반	
2015년	3	1	1	1	1,439,000원

○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접수 세부현황

총계(건)	이물혼입	무신고	허위 과대광고	유통기한 과	변질식품 판매	기타 (불청결등)
179	52	9	7	22	39	50

※ 기타 : 제품표시, 불청결 관련

○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처리내역

총계(건)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과태료	고발	이첩	행정 지도	민원 취하	조사 불가
179	6	11	27	9	50	59	5	12

다.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2015년도 식품수거 검사실적

수거·검사 건수(A)	부적합건수(B)	부적합건수 비율(B/A*100)
766	0	0%

라. 위해식품 회수 실적

○ 2015년 위해식품 회수 실적

회수건수	생산량 (kg)	회수계획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회수율산정식 (회수량/회수계획량) ×100
2	151.2	50	50	100%	

※ 식품유형 : 식용유지류 1, 조미식품1

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관리

○ 2015년도 허위과대광고 적발·조치내역

모니터링 건수	조치 유형			
	영업정지	고발	시정명령	기타 (행정지도 등)
9	2	4	1	2

※ <영업정지 + 고발> 중복적용 : 1건

IV

2016년 가공식품안전 세부 추진계획

가. 민·관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활동 시 단속 사각 업소가 없도록 전수 점검 시행을 기본으로 하고, 불시 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 점검과 점검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영업 신고(등록)된 가공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전수 점검하면서 점검 시 영업행위에 불편이 없도록 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
- 점검 전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소에 고지하여 업주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사전 예고제를 활용한 지도·점검 실시

◆ 대 상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등(총 : 1,180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판매·제조·가공	식품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기타식품 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운반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판매업
1,180	50	405	16	2	38	15	1	9	644

◆ 점검시기

- 계절별, 시기별 집중 점검대상 선정

☞ 명절(설, 추석) : 떡류, 과자류(한과), 식용유지 등 제조업소

※ 서울시 및 식약청 점검이 있는 경우 중복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점검 조정

☞ 하절기(6월 ~ 7월) :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 행락철(봄·가을) :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식육제품 등 제조업소

- 기타 위해식품 유통 등 언론 보도된 경우 및 민원 발생 시 특별 점검

◆ 추진 내용

- 계절·테마별 성수식품 위주로 민·관합동 정기점검 실시

- 언론보도 등 이슈화된 위해식품 기획점검 강화

- 상습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

- 위생 또는 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 위생관리 우수업소, 멘토링 지원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 민원발생,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경우에는 출입검사 필히 실시

- 식품제조·가공(기타식품판매)업소 인터넷자율점검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로 중점관리대상업소 집중관리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판매 등

- 점검 사전 예고제, 민·관합동 단속 등으로 투명성 제고

◆ 추진기간(추진표)

분기별	점 검 대 상	비 고
1분기(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 떡류, 식용유지류 제조판매업소 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2분기(4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락류, 면류 등 즉석섭취 식품류 지도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등 제조업소 점검 • 유통전문판매업소 지도점검 	
3분기(7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다소비 식품 특별점검 • 식품소분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식육제품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점검 	
4분기(10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절 성수식품 유통·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 떡류, 한과류, 빵류 제조업소 점검 •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 식품 제조업소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추출가공식품 특별점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점검활동(전수 조사) 	
공통(기간에 상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발생 업소 및 기준 부적합 식품 통보된 관내 업소 • 언론보도 등 이슈화된 위해식품 특별점검 	

※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확행(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 ☞ 다음 위반사항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반행위 또는 고의적·상습적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병과
 -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소분·판매 행위
 - 표백제 처리 및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병원성 미생물 등 인체 유해물질 사용 및 제조 행위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행위
 -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위반 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 후에도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우리구, 서울시, 식약청 등 행정기관의 중복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 후 서울행정시스템, e-식품안전관리시스템(겔럭시탭) 등 입력 처리

나.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강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인체 위해성 우려 및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유통 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거·검사 기능 강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 검사, 수거 등)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16년도 축산물위생업무편람

추진목표(방향)

- 우리구 식품수거·검사 목표 : 총 376건

수거목표	시민다소비 유통판매식품	회수이력업체 출고전 검사	위해우려식품	농·축산물	식중독 발생 우려 조리식품
376	183	2	60	20	111

※ 식품수거 검사 목표시 분류된 식품내역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대 상

- 수거대상 : 유통 전 또는 유통·판매 중인 식품일체
- ☞ 시민다소비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도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중 최근 5년간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식품)

- 과자류(젤리포함), 빵 또는 떡류(만두 포함), 식육 또는 알가공품
-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녹차포함),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조미된장, 조미고추장, 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 김치류, 절임식품, 주류, 건포류, 과·채가공품, 튀김식품, 벌꿀, 식용얼음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냉동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 우유류, 집단급식소판매업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 ☞ 회수이력이 있는 식품제조업소의 동일품목류 출고전 식품
- ☞ 안전관리 변수별 가중치가 높은 식품
 - 안전관리 변수 : 수거검사 부적합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건수, 위해식품 회수 건수, 생산실적, 다소비, 수출부적합 이력 등
- ☞ 관내 제조·소분업소에서 생산된 식품
- ☞ 식품판매업소 유통·판매 식품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식품 등
- ☞ 재래시장(전통시장) 판매식품
- ☞ 축산물, 농산물, 원산지 관련 수거도 포함

월별 식품수거검사 대상품목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식품 유형	식용유지류,떡류	두부류,묵류,면류	다류,커피음료류	특수용도식품,장류,조미식품	드레싱,김치류,젓갈류	절임식품,조림식품,주류	건포류,기타식품류,규격외일반가공품	장기보존식품,식품첨가물,농산물	과자류,빵류,떡류,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	잼류,설탕,포도당	과당,엿류,당시럽류	올리고당류,식유(알)가공품,어육가공품

※ 서울시 2016년 가공식품안전 업무계획에 따라 식품수거 대상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수거 및 검사 방법

-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한 식품을 검사기관 의뢰
 -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일반 식품의 기준과 규격 등 제반 검사
 - ☞ 강남·강북검사소(지소 포함) : 농산물, 건조수산물, 한약재
- 검사항목 : 식품별 기준·규격외 검체 특성을 감안 항목 추가
(식품공전 참조)
- 수거비 지급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생산 식품 - 무상수거
 - ☞ 유통·판매 중인 식품 등 - 유상수거

세부 추진내용

- 계절별, 제품별 월별 수거시기 계획에 의거 목표량 376건 이상 달성
 - ☞ 유통점유율이 높은 특별관리대상(시민다소비)식품 30개 품목 및 수입식품
 - ☞ 국민 다소비 200대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포함) 생산제품 점검 병행 검사 실시
- 어린이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기호식품 및 사회적 이슈 식품 중점 수거검사
-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에서 유통·판매 중인 식품도 수거 실시
(학교주변, 재래시장, 연쇄점, 소형슈퍼마켓, 역주변 등)
-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농약잔류허용기준 파악을 위해 신속 수거)

행정사항

- 수거비 지급 :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재래시장 등 카드가 어려운 곳에서는 사전 방침을 거쳐 현금결제 후 관련 구입 증빙서류 첨부
-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 시 부적합 제품 유통 신속 차단 조사 실시
⇒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 폐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및 식품제조업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제조·유통·판매처 내역 통보)하여 회수조치 및 행정처분

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평가 관리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실시함으로써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위생등급)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추진방향

- 위생관리등급 평가 사전안내 실시(실시 1개월 전)
- 등급평가 결과는 출입검사 자료로 활용

대 상

총업소 수 (개소)	2016년도 평가대상 업소				2015년도 평가업소	평가시기 미도래
	계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51	30	8	22	0	18	3

- 신규평가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 영업신고 후 1년 미만 업소의 경우 익년 평가시기에 평가
- 정기평가 : 2014년도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
- 재평가 : 정기평가 후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이상), 영업자변경업소 및 장기생산 중단(휴업)업소, 중점관리업소
- 2015년 평가업소 내역

연번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평가사유
1	종암식품	서영조	성북구 월곡로5길 28 (종암동)	정기평가
2	씨농샘골참기름	주용배	성북구 종암로 56, 바동 102호, 103호 (종암동, 고려상가)	정기평가
3	(주)디에즈코리아	전성현	성북구 화랑로11길 26, 지층 B122호(하월곡동, 월곡갑을명가)	정기평가
4	내고향왕만두(제1공장)	김영희	성북구 정릉로10길 57, 지상1층 (정릉동)	정기평가
5	동병상련	박경미	성북구 정릉로10길 42-6, 지상1층 (정릉동)	정기평가
6	(주)중원식품	이산근	성북구 한천로 549 (석관동, 지상1,2층))	정기평가
7	가부끼	장순상	성북구 길음로 141, 상가동 지층 2호 (길음동, 신안아파트)	정기평가
8	두루	차동성	성북구 성북로13길 2, 지하1층 (성북동)	정기평가
9	다홍치마	임성욱	성북구 보국문로20길 18, 지하1층 (정릉동)	정기평가
10	(주)한스갤러리앤코	전용철	성북구 정릉로10길 127, 지상1층 (정릉동)	신규평가
11	푸드미션(Food mission)	임근창	성북구 장위로 75, 1층 (장위동)	신규평가
12	뷰아커피	권중근	성북구 아리랑로 48, 지상1층 (동선동5가)	신규평가
13	커피스	박민규	성북구 종암로 56, 다동 204호 (종암동, 고려상가)	신규평가
14	나폴레옹제과	강경원	성북구 성북로 7, 지상4층 (성북동1가)	신규평가
15	와이케이푸드시스템	추영근	성북구 화랑로33가길 20, 지상1층 (장위동)	신규평가
16	커피담론	김도일	성북구 돌곶이로9길 5, 지상1층 (석관동)	신규평가
17	디터틀	박병찬	성북구 성북로18길 5, 지하1층 (성북동)	신규평가
18	잼있는인생	이예지	성북구 보문로 60, 1층 (보문동7가)	신규평가

◆ 세부 추진내용

- 평가 기간 : 하반기(11. 16 ~ 12. 15)
 - ※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의 종류
 - ☞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의 최초평가
 - ☞ 정기평가 : 신규 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에 실시하는 평가
 - ☞ 재 평가 : 보완 후 재평가 신청업소, 행정처분업소, 지위승계, 시설멸실 등 등급변경 사유 발생 시 재평가
- 평가 실시
 - ☞ 평가 대상업소에 위생관리등급평가의 취지 및 평가 방법 등 설명
 - ☞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실시
 - ☞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 설명 및 영업자 확인

◆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평가점수 분류로 등급 부여
 - ☞ 자율관리 업소 :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151~200점)
 - ☞ 일반관리 업소 : 시설 및 위생관리가 법적 기준에 적합(90~150점)
 - ☞ 중점관리 업소 : 시설 및 위생관리가 법적 기준에 미흡(0~89점)
- 평가결과 활용
 - ☞ 자율관리 업소 :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 용자사업 우선 지원
 - ※ 단, 민원발생과 생산·유통제품 부적합시 특별 출입검사 실시
 - ☞ 일반관리 업소 : 계절별 성수식품 점검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경우 점검 실시
 - ☞ 중점관리업소 : 매년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 실시(위생등급 수준 향상 유도)

◆ 행정사항

-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에 보고(제출)
 - ☞ 평가대상 업소 수, 평가실시 업소 수, 업소 현황, 평가점수, 평가 등급
- 평가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통보
 - ☞ 평가점수, 평가 등급, 관리사항 등

라. 위생개선(멘토링) 및 방문 교육

소규모로 영업하며 상대적으로 위생지식이 미흡한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식품표지판을 배부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방문하여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교육하여 판매자의 의식을 변화시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우리구 식품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관내 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추진 사업

◆ 추진경위 및 방향

- 추진경위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타 업종에 비해 거의 전 업소가 소규모로 영업 중이며, 영세한 영업주들이 위생관리 및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추진방향 :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업소를 방문하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위생지도 및 표지판 배부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소규모 식품접객업소 포함)
- 시장 내 대형 마트에 소재한 업소는 제외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 내용

- 식품등 표시기준 표지판 제공 및 기재요령 안내
- 법령 준수사항, 시설 및 관리 운영상태 등 진단
- 위생수준이 낮은 업소 중점 개선 위생지도

◆ 기타사항

- 무지로 인해 적발될 수 있는 표시기준에 대한 안내 및 그 외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현장지도는 우리구 담당 공무원과 즉석판매제조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의 참여도를 높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위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를 향상시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

마. 기계·기구류 안전 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주민의 곁에서 식품판매를 하고 있는 떡방앗간, 참기름집,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계도 활동으로 영업자 스스로 위생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에게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 검사, 수거 등)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구역단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계도중심의 전체 점검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및 위생등급관리평가 점검시 병행하여 추진
-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한 주택가 주변 즉석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내 업소 특별 점검
- 추출기(중탕기), 식용유지 착유기, 고춧가루 분쇄기, 스팀(증기)보일러 등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교육 병행 실시

☞ 대상별 주요 안전관리 항목

- ▶ 식용유지 착유기
 - ⇒ 작업시작 전·후 반드시 청소 할 것.
 - ⇒ 착유기 설치 시 주변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벽면과 충분한 간격 유지
 - ⇒ 1대의 착유기로 여러 종류의 유지를 착유하는 경우 상호 교차 오염 우려가 상존하므로 충분히 청소 한 후 다른 종류의 유지를 착유 할 것
 - ※ 들기름 착유 후 청소가 미비한 상태에서 참기름 착유시 리놀렌산 수치 증가 (들기름의 리놀렌산 자연함유량 : 60%내외임)
- ▶ 고춧가루 등 분쇄기
 - ⇒ 인위적인 고추씨 첨가 여부
 - ⇒ 고추의 꼭지(꽃받침 제외)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 ⇒ 고춧가루 제조 시 식염, 당류 등 일체의 다른 원료 첨가 금지
- ▶ 추출기(중탕기)
 - ⇒ 밸브, 호스 등의 기구류의 세척, 살균 등 위생적 보관관리
- ▶ 스팀(증기) 보일러
 - ⇒ 보일러 내부 물 교환 : 침전물 제거, 물 배출 후 즉시 보충, 청결상태 유지

◆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스팀(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떡, 만두 제조업소
 - ☞ 착유기를 이용하여 참기름, 들기름을 제조(착유)하는 제조업소
 - ☞ 분쇄기를 이용한 고춧가루 제조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 스팀(증기)보일러 사용하는 방앗간 및 떡집
 - ☞ 착유기가 있어 참기름, 들기름을 착유하는 기름집
 - ☞ 고춧가루를 빻는 고추방앗간
 - ☞ 추출기(중탕기)를 사용하는 건강원

◆ 점검시기(기간)

- 연중 수시점검 실시(연 1회이상 점검)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하여 점검 실시
 - ☞ 서울시 점검반에서 점검한 업소 제외(중복점검 자제)

◆ 세부 추진 내용

- 위생적 제조·판매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 안전관리 점검 사항
 - ☞ 스팀(증기) 보일러
 - 보일러 내부 물탱크 침전물 제거 등 관리여부
 - 스팀(증기) 유도관 잔류수 배출 이행여부
 - 보일러 주변 및 스팀 유도관 등 청결유지 관리
 - ☞ 식용유지 착유기
 - 착유기, 볶음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1대의 착유기로 다른 종류의 유지 착유시 충분히 청소 후 착유여부
 - ☞ 고춧가루 등 분쇄기
 -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설치 여부
 -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행위 여부
 - 분쇄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 추출기(중탕기)
 - 추출기, 유압기 등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 청결유지 관리여부
 - 세척제는 적합한 식품첨가물 등 사용여부
 - ☞ 공통사항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 영업자 및 업소 종사자가 주로 적발되는 준수사항인 건강진단결과서(1년에 1회) 발급 제도
- 영업신고증 보관 및 위생교육(보수교육) 참여 안내
-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및 표시기준 위반 등 확인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 무신고 영업 적발시 고발

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관리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기능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판매업소의 영업 형태에 따라 현장점검과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점검
-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행위 중점 점검

◆ 대 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644개소

◆ 점검 시기(기간)

- 허위·과대광고 행위 : 연중 감시활동 실시
 - ☞ 업소 방문하여 홍보물, 광고 전단지 등 확인
 - ☞ 별도의 판매 영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점검
 - ☞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인터넷, 신문 등)
- 영업장 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 10~11월 중 전수점검 실시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하여 점검 실시

◆ 세부 추진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적 보관시설, 진열대 등 시설기준
-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 광고사전심의필증의 보관
-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감시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 무신고 영업 및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관리

가공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여 식품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 및 잘못된 식품으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설 치

- 우리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연계 구축 운영
 - ※ 도메인 : <http://www.kfda.go.kr/cfscr/>
- 우리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접수
- 직접 신고된 민원사항을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 운영 관리

- 신고센터 전담 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
 - ☞ 전담 직원 2명 : 무신고 및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담당
 - 무신고 영업행위 민원 조사 및 처분
 - 이물 혼입 등 소비자불만 민원 조사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 ☞ 전담 직원은 수시로 민원 접수 여부 확인 후 접수 즉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통보
-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철저
- 전담 직원 변경 시 ID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처리 요령

- 민원 신속 조사 처리
 - ☞ 접수 또는 이첩된 신고내용은 처리지연 및 누락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사 후 결과 등록(통보)
 - ☞ 조사대상 식품이 회수 대상인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수 명령기관에 신속 통보
- 조사결과 통보 : 신고센터 결과 등록으로 같음
 - ☞ 단계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표에 조사결과를 등록
 - ☞ 최종단계 조사기관은 조사종결 후 민원답변 사항 등록
-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신고센터 내에서 조사결과 확인 가능
 - ☞ 직접 방문, 일반 전화, 우편 등 민원 신고는 민원인이 신고센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리 후 민원인에게 유선(메시지) 또는 공문으로 처리결과 통보
- 조사결과 행정처분 및 포상금지급
 - ☞ 조사기관과 행정처분 기관이 동일한 경우
 -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후 신고센터에 입력
 - ☞ 조사기관과 행정처분 기관이 다른 경우
 -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 기관으로 조사결과 통보(공문 시행)
 - 신고센터 부서이첩 기능으로 조사표를 행정처분기관으로 이첩하여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내역 입력 기능 부여
 - ☞ 포상금은 신고자 개인당 해당 시·군·구(서울시) 내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 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등록 및 서울시에 통보

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절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허위·과대광고 차단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정보 제공
- 떼다방 점검을 위한 『식품안전실버감시단』 운영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허위과대광고 사항 행정처분 확행

◆ 기 간

- 연중(수시)

◆ 운영 관리

- 모니터링반 설치·운영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지정 운영
 - 모니터링 전담요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활동비 지급
 - ☞ 1월에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 차단
- 모니터링 실시
 - ☞ 대상 : 인터넷, 방송(지역케이블), 신문, 잡지, 인쇄물 등 각종 매체 제품홍보 기사 모니터링
 - 유사건강기능 식품 판매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 월 1일 이상 인터넷 쇼핑몰 등

-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을 통한 떼다방 감시
 - ☞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상시 감시하여 획득한 정보로 지도·점검 실시
 - ☞ 경로당 및 노인대상 판매장 상시 감시체제 운영(정기적 방문 탐지)

◆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항 증거수집 및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무신고 영업 및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의 신속 회수 조치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동법 제72조제3항 (폐기 처분 등)
-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회수대상식품 신속회수 조치

- 회수구분 및 회수대상

구 분	강제회수	자진회수
내 용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회수개시 주체	회수명령기관(지방청, 시·군·구)	영업자
행정처분	감면처분 불가	회수결과에 따라 감면처분 가능
회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회수 방법 :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에 대해 회수·폐기토록 행정명령

- 회수 절차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검사결과통보	검사(적발)기관 또는 영업자 → 관할기관	검사결과 부적합 및 지도점검 결과 위반시 식품긴급통보 실시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구 → 영업자	회수명령과 식품위생법 제73조에 해당되는 경우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3	홈페이지 공개	구 → 식약처 및 시도	회수사실 홈페이지 공개 요청
4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구	영업자가 구(회수명령기관)에 회수계획서 제출
5	회수 모니터링	구 → 영업자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수 과정 모니터링 실시
6	회수결과 보고	영업자 → 구	회수 완료 후 결과 구에 제출
7	회수결과 검증	구 → 영업자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회수 물품 압류
8	회수 제품 폐기	영업자 → 구	회수 제품 폐기(매립, 소각 등) 후 최종 폐기 결과 제출
9	시정 및 예방조치	영업자 → 구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10	행정처분	구 → 영업자	행정처분 실시

차. 위기관리 대응 인프라 구축

식품사고 발생시 관련업소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동보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 식품위생법 제17조(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 서울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서울시 식품안전과, 2014.12월)

◆ 추진배경

- 멜라민 사태 등 식품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식품사고 발생 시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필요

◆ 추진방향

- 중앙 부처에서 식품으로 인한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서울시 및 우리 구에 직접 위기상황 발생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속 통보
- 다음 적용범위에 따른 위기 상황 접수건에 대하여 신속 조사

- 식품등에서 위해성분 및 사용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식품 테러가 발생한 경우
- 재난·재해로 인한 식품관련업체 건물 파손,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 추진내용

- 대규모 식품사고 발생을 대비한 관내 기초자료 파악
 -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및 집 단급식소(영양사 등) 영업주 연락망 구축·정비(동시동보 활용)
- 위기대응 매뉴얼 숙지로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파악

-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조치를 통한 현장 위기관리 역량 극대화
- 식품사고 발생(우려) 정보 입수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파급효과 및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한 중앙부처의 정보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 분석
- 서울시에 한정된 국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휘를 받아 식품안전사고대책본부 비상근무 발령
 - ☞ 서울시 식품안전사고대책본부(본부장:시장) 수립 시 병행하여 우리구 식품안전사고대책본부(본부장:구청장)도 긴급 수립·운영

◆ 행정사항

-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현장 방문 교육 실시
-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대처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식품관련 영업자 등 긴급 연락처 파악)
- 상황발생시 상황 접수 및 보고 철저
- 부적합식품 발생 시 긴급 통보 및 신속조사, 점검 보고

V 월별 점검 추진일정(표)

구 분	월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급 평가												
유통식품 수거검사												
월별 수거 품목	식용유, 지류, 떡류	두부류, 목류, 면류	다류, 커피, 음료류	특수음식, 도식, 장류, 조미품	드레싱, 김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 주류	건포도, 식료품, 규격외 반가공품	장기식품, 보존식품, 외농산물	과자류, 빵, 떡류, 아가,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당, 당시럽	올리고당, 식육(알), 가공품, 어육, 가공품

VI

행정사항

- 분기 등 각종 통계 제출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식품 등 관련업소 현황 및 감시실적
 -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소 현황 및 감시실적
 - 성수식품 지도·점검실적
 - 식품등의 수거검사 관리통계 현황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결과
 - 식품안전분야와 관련된 각종 보고요청 자료 등
- 서울시 사업 협력 및 식약처, 서울시 등 기타 기관 합동단속 요청 시 적극 협조